

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

1. 과정간 교차이수

- 학사과정 학생의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 : 학부 3학년 이상만 수강 및 전공인정 가능(1,2학년 수강시 성적표에 표기되나, 학사과정 졸업사정시 유효 이수학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.)
- 대학원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 : 석,박사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까지 학부 과목 수강 가능(반드시 소속 대학(원)에 문의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후 신청)
- 학부/대학원 과정간, 대학원의 석사/박사과정간 과거 이수한 과목의 수강신청(중복수강)은 가능하나 수료/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.

2. 재수강

- 2006학년도 1학기부터 **"C+"이하를 취득한 교과목만 재수강 가능**
 - 재수강시 취득성적은 상한 "A0"로 제한. 단, 2015년 이전 수강과목의 재이수는 1회에 한하여 "A+"까지 취득 가능
- 대학원과정 학생은 초수강성적과 상관없이 재수강 가능
- **2019학년도 동계계절수업 수강과목의 재수강은 개강 후 수강신청변경기간(3.9.~3.20.) 중 수강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재이수 처리 가능.** 정상적으로 재이수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속학과(부)에서 교과구분 정정 및 재이수 인정처리 가능(개강일(3.16.) ~ 수업일수 1/4선(4.7.))
- 폐지된 교과목에 대한 동일교과목은 자동 재이수 신청처리가 되나, **대체 지정된 교과목은** 별개 이수과목으로 인정되므로, 재이수 인정을 받으려면 수업일수 1/4선(4.7.)까지 소속학과(부) 사무실을 통해 교과구분정정을 받아야함.

3. 중복수강신청

-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중복되도록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하게 중복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
 - 1) 수강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중복된 교과목 중 한 과목 수강신청
 - 2) 중복된 교과목들의 담당 교원 모두의 승인을 받은 **중복수강요청서를 학사과에 제출**
(기수강신청한 교과목 외에 수강신청이 필요한 교과목이 정원초과인 경우 수강신청정정요청서(초안지)도 함께 학사과로 제출)
- ※ 제출기한 : (1차) 2.6.(목) ~ 2.7.(금) / (2차) 3.23.(월) ~ 3.24.(화)

4. 수강신청변경기간(3.9.~3.20.) 및 수강신청정정요청서(초안지) 제출(~3.20.)

- 수강신청변경기간 중에는 수강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교과목 신청 및 삭제가 가능하며, 정원초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(부) 수강신청조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정정요청서(초안지)를 **교과목 개설학과(부)에 제출**

5. 장애학생 수강신청

- 수강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수강신청정원이 초과된 교과목에 대해서도 수강신청 가능
- 장애학생지원센터(880-8787)를 통하여 수강신청정정요청서(초안지) 제출 및 처리 가능

[별첨 1]

20 학년도 학기 중복수강 요청 및 확인서

○ 학 번 :

○ 성 명 :

○ 소속대학 및 학과(부) :

[illegible]

※ 교과구분: 교양, 전필, 전선, 일선, 교직, 대학원

※ 전필, 전선의 경우 전공구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.

신청사유 : (구체적으로)

제출년월일: 년 월 일

신 청 자 : (인)

(연락처: ☎)

담당교수 : (인)

담당교수 : (인)

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귀중